

코로나 한풀 꺾였다지만...휴가철 등 변수

지난해 여름에도 재유행...당국, 일상회복 연기 독성 약하고 병상 충분...“시간 지나면 안정화”

일상회복 이후 확산세를 이어가던 코로나19의 기세가 7주 만에 한 풀 꺾였지만 경계심을 늦추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름 휴가와 개학 등으로 확진자 규모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15일 질병관리청 집계에 따르면 8~14일까지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9018명이다.

이는 직전 주 5만380명과 비교해 1362명 감소한 수치다. 최근 6주 연속 증가하던 유행이 감소 전환한 것이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일상회복 직후였던 6월 6~12일 1만6438명→6월 13~19일 1만6265명→6월 20~26일 1만6163명→6월 27일~7월 3일 1만7792명으로 2만 명 미만을 유지하다가 7월 4~10일 2만 2815명, 7월 11~17일 2만7950명, 7월 18~24일 3만 8803명, 7월 25~31일 4만5523명, 8월 1~7일 5만380명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멈췄지만 유행이 장기화하

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지난 1주간 감염 후 증세가 악화돼 입원한 위중증 환자 수는 220명으로 직전 주(214명)보다 6명 늘었다. 사망자는 146명 발생해 직전주(98명)보다는 48명이나 증가했다.

게다가 여전히 상황이 악화할 변수는 존재한다. 통상 여름 휴가철에는 이동량이 증가하고 밀집·밀접·밀폐 등 '3밀' 환경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도 재유행이 발생해 8월10일 1만51707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또 보름 후인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학철을 맞아 교실 내 감염을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도 있다.

이때문에 당국은 지난 3일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일 일상회복 관련 발표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법정감염병 등급이 4급

으로 낮아지면 코로나19 환자 집계가 현행 전수 감시 체제에서 표본 감시로 바뀐다. 현재 의무인 병원·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도 권고로 바뀐다.

질병청 관계자는 전날 설명회에서 “이번 한 주 더 유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4급 전환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 전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과거처럼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정도로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XBB 계열 변이의 독성이 강하지 않고 의료적 대응 역량도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올바른 손씻기와 실내 환기, 증상 발생 시 다른 사람과의 접촉 줄이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당국은 XBB 변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백신을 도입해 오는 10월부터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현재의 유행세로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서 그 이후에는 일상회복 단계를 진행해도 무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고흥경찰, 흥기안동 등 강력범죄에 대응한 합동순찰 강화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흥기안동 등 강력범죄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중밀집 지역의 민·경 합동 순찰을 실시하였다.
고흥=기동취재본부



美USCG 함정, 해양경찰교육원 방문 및 교류 행사 가져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성수)은 미국 해양경비대(USCG : United States Coast Guard) 함정이 광양항에 입항, 해양경찰교육원과 상호 교류 행사 및 합동 해상 훈련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선욱기자



국립공원공단, 캠버리 참가자 끝까지 챙긴다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캠버리 대회 참가자들을 위해 6일간 총 1만 1천명 캠버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체형 부스, 홍보관, 이동 탐방안내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광양소방 의용소방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 중부 남 여의용소방대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쳤다.
광양=김현근기자



여수해경, 엘리베이터-주차 차단기 활용 구명조끼 홍보 나서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구명조끼 착용만으로도 바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개선을 위해 구명조끼 입기 이색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완도해경, 주말 휴일 섬마을 응급환자 '골든타임 사수'에 총력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주말·휴일을 불문하고 주말 휴일 발생한 섬마을 응급환자 4명을 육상 긴급 이송으로 정검다리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
완도=기동취재본부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1.8평 이상 휴게시설 의무화

고용부 “작년 50인 이상 사업장 이어 적용대상 확대”

오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그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15일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1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10명 이상~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청소·경비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에 해당 사업장은 산안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소 바닥 면적의 경우 6㎡(1.8평)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또 휴게시설 위치는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며,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하면서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과 마실 수 있는 물 등도 구비되어야 한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에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부는 그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 데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사업장의 상당수가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안전보건공단 조사에 따르면 휴게시

설 미설치 사업장은 적용대상 15만9000개소 중 8.4%인 1만3000개소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다만 어려운 경영 사정 등으로 여전히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점검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의무화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정부는 적용 사업장을 규모로 차등을 두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을 제외해 차별하고 있다”며 “최소 면적 9㎡(2.7평) 이상 등 현장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슬비기자



광복절 경복궁 찾은 시민들

광복절인 15일 경복궁을 찾은 관람객들이 광화문 파수익식을 지켜보고 있다.

의약품 처방 대가 받은 공중보건의, 항소심서 집행유예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처방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전형식 배운경)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또 벌금 3000만원에 2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 사이 B회사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해 준 뒤 처방내역에 대한 대가로 11차례에 걸쳐 처방금액의 합계액 10~20%에 달하는 금액 28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중보건의에서 소집해제된 시점인 2019년 5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130여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의약품 유통 영업판매 대행사 영업사원 C씨로부터 ‘B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얘기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사실인 및 범의없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임무를 위탁받은 자일 뿐 의약품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C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행위가 의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며 의약품 처방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 의료인의 적절한 처방을 왜곡해 의료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을뿐 아니라 공무원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오유나기자